

충청북도청주홍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3년 11월 3일

나. 회부일자 : 1993년 11월 3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홍덕사지관리사무소가 충청북도청주고인쇄박물관으로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정비

4. 주요골자

- 홍덕사지가 고인쇄박물관으로 변경됨에 따른 용어의 정비

(청주홍덕사지 → 고인쇄박물관)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청주홍덕사지 관람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
충청북도 청주홍덕사지 관람료징수조례명 중 "홍덕사지"를 "고인쇄박물관"으로 하고

조례조문중 "문화재보호법제39조"를 "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"로 하며

"홍덕사지"를 "고인쇄박물관"으로, "홍덕사지사무소"를 "청주고인쇄박물관"으로 하는등

충청북도 홍덕사지관리사무소가 충청북도청주고인쇄박물관으로 기관명칭이 변경('93.6)됨에 따라 정비대상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은 승인하여 즉시 타당한것으로 사료됨.

6. 칙 부

충청북도 청주홍덕사지 관람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(안)